

의안번호	제578호
의결 연월일	2013년 12월 일 (제325회)

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심기보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11월 29일

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기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11월 29일

발 의 자 : 심기보, 김희수, 김봉희
김형근, 임 현, 정지숙
김영주 의원

1. 제정이유

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 연구회 위원 수당과 여비 등 실비 보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등을 위한 실비보상 조항 신설 : 제13조2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였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2(실비보상 등) 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 <u>신 설</u> >	제13조2(실비보상 등) 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